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5. 11.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1. 28.
도시환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고명욱 의원 등 8명(장호섭, 서민우, 서보영, 황국주, 강한곤, 권숙자, 도하석)
○ **발의일자**: 2025. 11. 14.
○ **회부일자**: 2025. 11. 14.
○ **검토기간**: 2025. 11. 14. ~ 11. 21.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4. 참고사항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5조
- 「건축법」제2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5. 11. 14. ~ 11. 26.):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이상기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생활주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위험수목 처리 지원, 지원신청, 지원결정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을 명시하고
- 안 제6조에서는 예산 지원 대상 위험수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니거나 다수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경우 등 지원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험수목 및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수목으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하천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매매나 경제적 수익창출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 또는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

5.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6.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지름이 20cm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단독소유: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2. 공동소유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②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에 (대표)소유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③ 위험수목의 소재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표 소유자 한 명을 정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소유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소유자 및 신청인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 지원대상 구분(해당란에 ✓ 표시): □ 단독주택 □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table>
<tr><td rowspan="2">지 원
대상지</td><td colspan="5">지 번: 대구광역시 달서구</td></tr>
<tr><td colspan="5">소유자: (연락처:)</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성 명</td><td></td><td>연 락 처</td><td colspan="2"></td></tr>
<tr><td>신청사유</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8">대상수목</td><td>연번</td><td>수종</td><td>나무높이(m)</td><td>가슴높이지름(cm)</td><td>지원내용</td><td>비 고</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td></tr>
<tr><td>기 타
요구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 임: 위험수목 현황사진 1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붙임]

현 황 사 진

○ 대상 위치도	
전경 사진(주변환경 포함)	근경 사진(해당 수목 상세)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 수목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번지

○ 수종 및 수량:

○ 정비사유:

○ 정비내용: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번지 소유자로서, 위 수목에 대한 처리(제거, 가지치기 등)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붙 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 대표 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 처	비 고

□ 공동소유자 동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소유자 성명	주 소	서명(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이 사유지 내 위험수목 처리(제거·가지치기)에 대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 소유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29.(생략)